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0
----------	------

2022년 0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2년 05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05월 27일
- 라. 상 정 일 : 제30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상한)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35명('22. 4월 말 기준)
  -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직원 : 총 45명
  - 원장, 선임교사, 교사 33,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4, 관리사 등 4
  - ※ 원아 현원 증가 시, 교사 2인 추가 채용 예정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3.1.1.~'25.12.31.)
  - 향후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2년 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3년 예산(안) : 1,802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20.10월~'22.1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2.4.22.)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조건부 적정'
  -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필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수정계획 수립('22.5.17.)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 적정 후속조치 심의결과 : '적정'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1)에 따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본 동의안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35명('22. 4월 말 기준)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 직 원 : 총 45명  
- 원장, 선임교사, 교사 33,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4, 관리자 등 4  
※ 원아 현원 증가 시, 교사 2인 추가 채용 예정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1월부터 3년<sup>2)</sup>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 ('23.1.1.~'25.12.31.)  
- 향후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2년 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3년 예산(안) : 1,802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수탁 사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1)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검토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청 직원 자녀(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하는 시설로,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간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 연혁]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비 고
'99.01~'01.07	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01.08~'08.10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08.11~'11.09	학교법인 숙명학원	
'11.10~'14.09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4.10~'17.09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7.10~'20.09	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10~'22.12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행정국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4조<sup>3)</sup>,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sup>4)</sup>)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재위탁 추진을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행정국의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결과(22.4.) : 조건부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또한, 행정국의 2021년 지도·점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5)에 근거) 결과, 직원 채용 시 평가항목 및 심사위원단 구성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고, 재물조사계획 수립 없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2차(2022년 4월 14일) 점검에서는 소액 용역계약의 경우, 사전 용역계약 계획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소액 용역계약일지라도 사전 용역계약을 수립할 것과 적치물 관리 미흡이 지적 및 개선 요청되었음.
- 시청직장어린이집은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관리, 폐적치물 등에 대한 관리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바, 어린이집의 특성상 안전과 위생을 위해 교구 및 기자재 등 물품·비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행정국 1차 지도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총평 >

- 회계 운영일반 및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제반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직원채용 및 물품관리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즉시 또는 개선안 마련 후 '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

○ 적정운영 및 우수사례

- 체계적인 비품관리를 위해 자산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1층 교재교구·비품창고를 영역별 분류하여 정리함
- 코로나19 상황별 어린이집 자체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제작·운영하여 체계적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별도 보관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 개선필요 사항

- 직원 채용 심사 시 서류전형은 제출서류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결정하여야하나, 평가항목 일부에 정성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필요. 또한 수시 인사채용 시에 내부위원 2인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어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의 심사위원단 구성 필요
-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 미흡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2022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행정국 2차 지도점검결과〉

### □ 점검결과

#### 〈 점검총평 〉

- ◆ 회계 및 운영일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제반 지침을 준수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용역계약 및 적치물 관리 등에 미흡사례가 있어 즉시 또는 '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

#### ○ 적정운영 및 우수사례

-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비품관리 체계(지침)을 마련하고 물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비품 관리 중임
- 코로나 대응 안전수칙 1일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 영유아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개선필요 사항

- 소액 용역계약의 경우, 사전 용역계약 계획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소액 용역계약의 경우라도 사전에 용역계약을 수립할 것
- 이후 일부 폐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어 즉시 처리 조치필요

- 한편,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2021.10) 수탁사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총1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행정국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 1. 수탁사무운영 분야 지적사항

- A재단은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원장에게 재위탁하는 성격의 '위임계약' 체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자문 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교직원 연수와 관련 없는 '교직원 연수연구비'에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청구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분기별 정산보고를 미보고하거나 보고기한을 미준수하였음.

## 2. 일반관리 등 운영 분야 지적사항

- 어린이집 운영규정은 투명한 예산집행 관련 조항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관련 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비품에 대해 연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인력개발과는 어린이집 비품관리에 대해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관내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준없이 임의로 여비지급하고 여비지급시 일부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미작성하였음.

## 3. 보육교직원 채용 등 인사 분야 지적사항

- 어린이집 원장 채용시 공개채용규정을 위반하였고,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기간 등을 미준수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수당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수당을 부당지급하고 직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은 과소지급하였으며,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 등은 과다지급하였음.

## 4. 아동교육 관련 분야 지적사항

- 보육아동 급식은 어린이집 내 직접조리원칙이며,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대체급식 및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식단표 등에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아동학대예방활동 부재 및 일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미실시하였음.

## 5. 회계 관련 분야 지적사항

- 급식비 및 공공요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하거나 업무소홀로 부적정하게 지출하고, 편성된 세출예산과목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지만 수용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교재교구비 등으로 잘못 지출하였으며, 지출행위시 지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일부 미첨부 하는 등의 회계상 문제점이 발생함.

- 어린이집 현장학습 시 점심식대를 보호자로부터 수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수납하여 지출하였으며, 보호자에 수납하는 특별활동비를 일부 미정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에게 미보고하였음.

## 6. 계약 및 시설관련 분야 지적사항

- 추정가격이 일정가격이상인 용역을 일반공개경쟁계약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계약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안전관리 시설 관리 미흡 등 일부 어린이집 시설이 기준에 미충족하였음.

[원아 현황]

(2022. 4월말 기준)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야간연장	소계
정 원	15	25	31	30	29	28	37	10	195
현 원	1	14	24	20	14	28	34	10	135

※ 3월 원아모집 인원 : 150명

※ 하반기 추가 입소 예정인원 : 12명

-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 자녀의 육아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를 위해 행정국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을 주요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특성상 회계연도에 맞추기 보다는 학교 개학시기(3월)에 맞춰 민간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끝으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방과후반 지속적 확대 운영 필요,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요청, 어린이집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 바, 행정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30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 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35명('22. 4월 말 기준)
  -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 직 원 : 총 45명
  - 원장, 선임교사, 교사 33,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4, 관리사 등 4
  - ※ 원아 현원 증가 시, 교사 2인 추가 채용 예정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3.1.1.~'25.12.31.)
  - 향후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2년 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3년 예산(안) : 1,802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20.10월~'22.1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2.4.22.)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조건부 적정'
  -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필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수정계획 수립('22.5.17.)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 적정  
후속조치 심의결과 : '적정'

※ 작성자 : 인력개발과 후생팀 김미숙 (☎ 2133-5779 )